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7. 12. 8.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7. 12. 8.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97. 12. 1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환)

가. 제안이유

- 내부부지침(97. 3. 20.)에 따라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크기 정액요금제 도입
- 원·정수비 구입비 인상으로 추가 부담 및 인구증가에 따라 부족되는 용수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절수의지 고양을 위한 최소한의 요금을 인상하고
-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6세대 내지 10세대 규모인 다세대주택의 적정규격인 구경32mm급 수관 및 계량기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수용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기본요금제 폐지 및 구경별 정액요금 신설
- 구경별 정액요금 도입 및 결정
- 상수도 사용료 평균 9.8% 인상
- 32mm 구경 정액요금 및 시설분담금 신설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상수도 사용료 평균 9.8% 인상은 시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 현재 상수도사업 적자가 연 46억으로 적정인 상폭은 22.6%임. 광역상수도 5단계 수주시설의 원활한 추진과 원 정수비 50.2%의 인상으로 부득이 인상하였음.

○ 상수도요금의 타 시·군 대비는?

○ 1톤당 부천시 256.2원, 서울 329원, 인천 329원, 수원 281원, 성남 318원으로 다소 양호한 요금임.

○ 평균 5인가족 기준 상수도요금 인상액은?

○ 5인가족 기준 상수도 사용량이 월평균 22톤으로 인상 전 3,910원, 인상 후 4,740원으로 770원 인상되었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3호
의결년월일	97. 12. 20. (제57회)

제출년월일 : 97. 12. 8.

제 출 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내무부지침(97. 3. 20.)에 따라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크기 정액요금제 도입
- 원·정수 구입비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 및 인구증가에 따라 부족되는 용수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절수의지 고양을 위한 최소한의 요금을 인상하고
-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6세대 내지 10세대 규모인 다세대주택의 적정규격인 구경32mm급수관 및 계량기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수용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기본요금제 폐지 및 구경별 정액요금 신설(안 제26조)

- 기본요금제 폐지사유

기본사용량보다 적게 사용하는 경우 미사용량에 대한 요금부과로 발생하는 주민불만해소

- 요금체계 개정내용(변경)

업 종

현 행 체 계

개 정 체 계

가정용	기본(10톤) + 5단계	구경별정액 + 6단계
업무용	기본(20톤) + 4단계	구경별정액 + 5단계
영업용	기본(30톤) + 3단계	구경별정액 + 4단계
육탕1,2종	기본(200톤) + 3단계	구경별정액 + 4단계

나. 구경별 정액요금 도입 및 결정(급수장치손료+기본요금제폐지결손액) (안 제26조)

구경 (m/m)	설치대수 (A)	보정계수 (B)	구 경 별 배 분 율 (A×B)/Σ (A×B)	부가금액(요금수입 1.00%)		급수장치 손 료 (D)	구경별요금 (C+D)
				총 액 (천원)	건당월액(원) (C)		
계	49,037		100. ⁰⁰	224,301			
13	38,836	1. ⁰	35. ⁴⁴	79,492	171	450	620
20	6,662	2. ⁷	16. ⁴¹	36,808	460	840	1,300
25	2,368	4. ⁸	10. ³⁷	23,260	819	1,200	2,010
32	(1)	8. ⁷	(0. ⁰¹)	(22)	(1,833)	(1,760)	(3,590)
40	513	14. ⁷	6. ⁸⁸	15,432	2,507	2,400	4,900
50	333	23. ⁴	7. ¹¹	15,948	3,991	4,600	8,590
75	176	48. ⁵	7. ⁷⁹	17,473	8,273	8,000	16,270
100	104	82. ⁸	7. ⁸⁶	17,630	14,127	13,000	27,120
150	41	180. ³	6. ⁷⁴	15,118	30,728	29,500	60,220
200	1	256. ⁰	0. ²³	516	43,000	54,000	97,000
250	2	345. ⁶	0. ⁶³	1,413	58,875	85,000	143,870
300	(1)	431. ²	(0. ³⁹)	(874)	(72,833)	128,000	(200,830)
350	(1)	541. ⁷	(0. ⁴⁹)	(1,099)	(91,583)	160,000	(251,580)
400	1	589. ⁵	0. ⁵⁴	1,211	100,917	182,000	282,910

※ 부가금액 : 기본요금제 폐지로 발생하는 연간 요금결손

※ 급수장치손료 :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의 감가상각비(교체비)

다. 상수도 사용료 평균 9.8% 인상 (별첨 요금조정계산표참조)

○ 업종별인상내용

- | | |
|----------------|---------------|
| -가 정 용 : 17.1% | -업 무 용 : 4.0% |
| -영 업 용 : 3.9% | -욕탕 1종 : 3.8% |
| -욕탕 2종 : 4.7% | |

라. 32m/m구경 정액요금 및 시설분담금 신설(안 제12조, 제26조)

○ 신설사유 :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6세대 내지 10세대 규모인 다세대주택의 적정규격인 구경 32m/m계량기 및 급수관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수용가부담경감

- 32m/m 구경정액요금 : 3,590원
- 32m/m 급수관 시설분담금 : 760,000원

※ 산출방법

32mm에 가장 가까운 수도계량기 중 큰 구경의 급수장치 손료 및 시설분담금 (40mm)	-	32mm에 가장 가까운 수도계량기 중 작은 구경의 급수장치 손료 및 시설분담금 (25mm)	×	$\frac{32\text{mm}-25\text{mm}}{40\text{mm}-25\text{mm}}$	+	32mm에 가장 가까운 수도계량기 중 작은 구경의 급수장치 손료 및 시설분담금 (25mm)
--	---	---	---	---	---	---

□ 기타 참고사항

부천시요금조정계산표

1. 요금조정계산표

조 정 전(I)							조 정 후(II)							전후대비(II-I)		
업종별	단지별 (본)	요금 부과 급수전	요금 (원/본)	(본)	조정 총액 (천원)	본당 요금 (원/본)	업종별	단지별 (본)	요금 부과 급수전	요금 (원/본)	(본)	조정 총액 (천원)	본당 요금 (원/본)	증 감 액		인상률 (%)
														조정액 (천원)	본당요금 (원/본)	
합계		2,751,969		79,966,763	21,499,649	268.9	합계		2,751,969		79,966,763	23,625,249	295.4	2,125,600	26.5	9.8
가 정 용	소계	2,594,936		56,028,301	9,713,823	173.4	가 정 용	소계	2,594,936		56,028,301	11,377,809	203.1	1,663,986	29.7	17.1
	0~10	425,996	1,300(130)	24,671,372	3,373,417	136.7		0~10	425,996	160	24,671,372	3,947,420	160	574,003	23.3	17
	11~20	993,945	170	20,695,455	3,518,227	170		11~20	993,945	200	20,695,455	4,139,091	200	620,861	30	17.6
	21~30	971,129	230	7,641,028	1,757,436	230		21~30	971,129	260	7,641,028	1,966,667	260	228,231	30	13
	31~40	159,108	300	1,243,120	372,936	300		31~40	159,108	350	1,243,120	435,092	350	62,156	50	16.7
	41~50	21,705	350	382,465	133,863	350		41~50	21,705	450	382,465	172,109	450	38,246	100	28.6
	51~	23,053	400	1,394,861	557,944	400		51~	23,053	500	1,394,861	697,430	500	139,486	100	25
업 무 용	소계	86,364		11,999,289	4,721,984	393.5	업 무 용	소계	86,364		11,999,289	4,909,849	409.2	187,865	15.7	4
	0~20	25,293	5,000(250)	1,603,344	431,820	259.3		0~20	25,293	280	1,603,344	448,936	280	17,116	10.7	4
	21~50	28,685	320	1,602,650	512,848	320		21~50	28,685	340	1,602,650	544,901	340	32,653	20	6.3
	51~100	17,079	370	1,363,115	504,353	370		51~100	17,079	380	1,363,115	517,984	380	13,631	10	2.7
	101~300	7,861	420	2,353,910	988,942	420		101~300	7,861	430	2,353,910	1,012,181	430	23,539	10	2.4
	301~	7,446	450	5,076,270	2,282,321	450		301~	7,446	470	5,076,270	2,385,847	470	101,526	20	4.4
	소계	69,165		8,837,118	6,040,915	683.6		소계	69,165		8,837,118	6,274,476	710	233,561	26.4	3.9
영 업 용	0~30	8,107	12,000(400)	2,066,813	853,932	413.2	영 업 용	0~30	8,107	480	2,066,813	992,070	480	138,138	66.8	16.2
	31~50	5,457	590	1,220,141	719,883	590		31~50	5,457	600	1,220,141	732,085	600	12,202	10	1.7
	51~100	33,236	680	2,778,209	1,889,182	680		51~100	33,236	690	2,778,209	1,916,964	690	27,782	10	1.5
	101~	22,364	930	2,771,955	2,577,918	930		101~	22,364	950	2,771,955	2,633,357	950	55,439	20	2.2
	소계	1,413		1,710,588	809,308	473.0		소계	1,413		1,710,588	840,656	491	31,348	18	3.8
옥 탕 용 (1종)	0~200	290	58,000(290)	245,547	81,954	333.8	옥 탕 용 (1종)	0~200	290	290	245,547	71,209	290	-10,745	-43.8	-13.1
	201~300	111	300	105,995	31,798	300		201~300	111	330	105,995	34,978	330	3,180	30	1.0
	301~500	143	460	185,806	85,471	460		301~500	143	480	185,806	89,187	480	3,176	20	4.3
	501~	863	520	1,173,240	610,085	520		501~	863	550	1,173,240	645,282	550	35,197	30	5.8
	소계	79		44,122	45,192	1,084.3		소계	79		44,122	47,304	1,072	2,112	47.7	4.7
옥 탕 용 (2종)	0~200	12	80,000(400)	13,836	6,320	456.8	옥 탕 용 (2종)	0~200	12	500	13,836	6,918	500	598	43.2	9.5
	201~300	10	700	6,259	4,381	700		201~300	10	750	6,259	4,694	750	313	50	7.1
	301~500	17	1,200	9,881	11,857	1,200		301~500	17	1,250	9,881	12,351	1,250	494	50	4.2
	501~	40	1,600	14,146	22,634	1,600		501~	40	1,650	14,146	23,341	1,650	707	50	3.1
	소계	12		1,347,345	168,427	125		소계	12		1,347,345	175,155	130	6,728	5	4
전용 공업용	0~100	1	12,500(125)	1,130	150	132.8	전용 공업용	0~100	본당	130	1,130	147	130	-3	-2.8	-2.1
	101~	11	125	1,346,215	168,277	125		101~	11	130	1,346,215	175,068	130	6,731	5	4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별표1)의 계량기구경별·금액 및 비고란 중 25m/m란 다음에 32m/m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위 : 원)

계량기 구경별	금 액	비 고
32m/m	760,000	

제24조제1항중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계량기구경별 정액요금은 이를 징수한다”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중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6조(요금) 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금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하며 이는 계량기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량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2조 및 별표4를 삭제하고, 제42조중 “별표5”를 “별표4”로 한다.

제33조중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을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로 한다.

제40조의1을 제40조의2로 한다.

제46조제18호를 삭제하고, 동조제19호 내지 제30호를 제18호 내지 제29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별표2)

업종별요율표

제량기구경별정액요금		업종별사용량요금			
제량기구경별	요 금(원)	업종별		사용량(m³)	요 금(원)
13m/m	620	가정용		1~10	160
				11~20	200
				21~30	260
				31~40	350
				41~50	450
20m/m	1,300		51 이상	500	
25m/m	2,010		업무용	1~20	280
32m/m	3,590			21~50	340
40m/m	4,900			51~100	380
50m/m	8,590			101~300	430
75m/m	16,270			301 이상	470
100m/m	27,120		영업용	1~30	480
150m/m	60,220			31~50	600
200m/m	97,000			51~100	690
250m/m	143,870			101 이상	950
300m/m	200,830	목 탕 용	1종	1~200	290
350m/m	251,580			201~300	330
400m/m	282,910			301~500	480
				501 이상	550
			2종	1~200	500
				201~300	750
				301~500	1,250
				501 이상	,650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급수정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사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급수정지와 폐전) ①계량기구경별 정액요금은 이를 징수한다.
②~③(생략)	②~③(현행과 같음)
제26조(요금) <u>요금은 별표제2호의 업종별 요금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u> <u>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u> <u>1.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전</u> <u>2. 수입불량으로 불출수 상태가 2개월 이상 계속된 수전.</u>	제26조(요금) <u>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금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하며, 이는 계량기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량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u>
제32조(급수장치손료) ①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급수장치손료는(별표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삭제)

현행	개정안
제33조(가산금) ①수도사용자 등이 <u>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u>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이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가산금)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40조의1(포상금지급)(생략)	제40조의1(포상금지급)(현행과 같음)
제42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제42조(과태료)(별표4).....
(단서생략)	(단서 현행과 같음)
제46조(권한의 위임)(생략)	제46조(권한의 위임)(현행과 같음)
1~17(생략)	1~17(현행과 같음)
18. 제32조 급수장치손료 징수	(삭제)
19~30(생략)	18~29(현행 제19호 내지 제30호와 같음)

(별표1)

(단위: 원)

현행			개정안		
계량기구경별	금 액	비 고	계량기구경별	금 액	비 고
13m/m	120,000				
20m/m	225,000	개 조 시 에 는 신 규 구 경 분 담 금 차 액 을 정 수 한다.			
25m/m	375,000				
<u>(신설)</u>	<u>(신설)</u>		<u>32m/m</u>	<u>760,000</u>	
40m/m	1,200,000				
50m/m	3,000,000				
75m/m	6,000,000				
100m/m	11,850,000				
150m/m	24,000,000				
200m/m	37,500,000				
250m/m	49,350,000				
300m/m	107,436,000				
350m/m	134,857,000				
400m/m이상	146,822,000				

(별표2)

현행					개정안				
업종별요율표					업종별요율표				
업종	기본		초과		계량기구경별정액요금		업종별사용량요금		
	사용량	요금	사용량(m³)	요금(원)	계량기구경별	요금	업종별	사용량(m³)	요금(원)
가정용	10	1,300	11~20	170	13m/m	620		1~10	160
			21~30	230	20m/m	1,300		11~20	200
			31~40	300	25m/m	2,010		21~30	260
			41~50	350	32m/m	3,590		31~40	350
			51 이상	400				41~50	450
								51 이상	500
업무용	20	5,000	21~50	320	40m/m	4,900		1~20	280
			51~100	370	50m/m	8,590		21~50	340
			101~300	420	75m/m	16,270		51~100	380
			301 이상	450				101~300	430
영업용	30	12,000	31~50	590	100m/m	27,120		1~30	480
			51~100	680	150m/m	60,220		31~50	600
			101 이상	930				51~100	690
육 탕 용	1종	200	201~300	300	200m/m	97,000	...	1~200	290
			301~500	460	250m/m	143,870		201~300	330
			501 이상	520	300m/m	200,830		301~500	480
								501 이상	550
	2종	200	201~300	700	350m/m	251,580	...	1~200	500
			301~500	1,200	400m/m	282,910		201~300	750
			501 이상	1,600				301~500	1,250
								501 이상	1,650